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00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한정애 · 윤후덕 · 박상혁
김주영 · 조정식 · 이정문
강준현 · 추미애 · 김영배
조인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유출에 따른 실질적 손해배상,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근절, 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책임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여부 확인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

치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외에 실효적인 이행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자료보전 명령,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정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39조의2 개정)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전반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거래 금지 및 처벌 신설(안 제59조, 제72조 개정)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구매·제공받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다. 자료보전 명령 도입(안 제63조 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또는 대책 마련을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함.

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안 제63조의3 신설 등)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이행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1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63조의2”를 “제63조의2, 제63조의3”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

· 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출입·검사 협조
2.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

정조치 명령의 이행

3.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명령의 이행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제71조제9호 중 “제59조제2호”를 “제5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59조제3호”를 “제5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2조제2호 중 “제59조제1호”를 “제5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

4.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자

제7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제7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3 및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 ----- -----.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9의3.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u> <u>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u> <u>사항</u>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략)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⑧ ----- ----- ----- ----- ----- ----- ----- ----- ----- ----- -----

② · ③ (생략)

제59조(금지행위) (생략)

<신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생략)

<신설>

⑤ ~ ⑦ (생략)

<신설>

하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9조(금지행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누구든지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제공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63조의3(이행강제금)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출입·검사 협조

2.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3.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표명령의 이행

	② <u>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제59조제2호</u> 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9. <u>제59조제1항제2호</u> ----- ----- ----- ----- ----- ----- -----
10. <u>제59조제3호</u> 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10. <u>제59조제1항제3호</u> ----- ----- ----- -----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제72조(벌칙) ----- -----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신설>

<신설>

3.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제59조제1항제1호-----

3.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은 자

4.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자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신설>

②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4. (생략)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

제73조(벌칙)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63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4.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u>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u> <u>자</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